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7. 17 선고 2018가단58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3735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 7. 17 선고 2018가단584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 2018.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대 25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6. 1. 20. 접수 제10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8. 2.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12. 23.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남편 D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장래의 담보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항지원